

## 제 4 주제

공공디자인 관련법규 및 관련정책

한상우

(충남발전연구원)

# **공공디자인 관련법규 및 관련정책**

2009년 6월 5일(금)  
한상욱(충남발전연구원)

## **발표 순서**

---

- I . 공공디자인 도입 배경
- II . 공공디자인 현황과 문제점
- III .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 IV .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변화
- V . 결론

## I . 공공디자인 도입 배경

page 3

###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

- 종합적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입각한 도시계획
  - 평면적 계획의 한계로 인한 입체적 계획의 필요성 제기 → 도시설계제도·상세계획 도입
- 입체계획 요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종합화
  - 사업지구 용도전용수단으로 변용
  - 지나친 규제위주의 사업방식과 사업성으로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도시디자인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 광범위한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함에 따라 계획내용의 추상화, 형식적 기술, 차별성, 실천수단으로서의 실행력 담보 無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전략으로의 디자인 적용
  - 신규 주택도시문제 해결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으로 디자인 적용
- 문화예술 및 복지가 어우러진 도시발전 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 도입
  - 기존의 획일화, 물질화, 무개성화, 비인간화에 대한 반성으로 공공디자인 도입
  - 규제방식의 도시계획 및 경관관리 수법이 재산권 행사의 문제와 미원 및 분쟁 소지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공공영역에 강하게 작용
  -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행정시책

## II . 공공디자인 현황과 문제점

page 4

### 공공디자인대상(공공공간)의 문제점

-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공공공간
  -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외부활동, 선택적인 휴식활동, 사회적 활동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한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하나 법적인 설치기준에 의해 조성되어 이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이 많음
- 연결되지 않는 공공공간
  - 도시전체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관성없이 무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이용도 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이 많음
-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
  - 도시발달에 따른 도시외곽 및 신시가지 조성지역에 집중 분포함
  - 생활과 밀접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법적으로 신규개발지에 조성
-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시각적 개선 위주 또는 중복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 과거 양적 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도시의 물리적인 디자인 향상에 치중됨
  - 도시의 중요가로에 대한 디자인 향상이 대부분이고, 그 의도는 좋으나 가로의 특성이나 현황에 적합한 디자인보다는 가로시설물이나 포장 등 시각적인 개선에 치중
  -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 사업간의 연관성 미 고려

## II. 공공디자인 현황과 문제점

page 5

###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 ○ 공공디자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 도시 이미지 형성, 도시발전전략으로서의 차용된 수단이며, 이로 인해 경관계획과 상충 발생

#### ○ 경관계획과의 상충에 따른 공공디자인계획의 위상 정립 미흡

- 전체가 부분을 포함할 수는 있어도, 부분이 전체를 포함할 수는 없다
- 학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의 선수립을 요구

#### ○ 공간영역을 벗어난 포괄적 디자인 개념의 적용 및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 정책대상을 공간영역의 기반, 설치물, 상징매체 디자인으로 크게 구분
- 공공공간디자인(도시경관, 건물, 색재, 조명계획)
- 공공시설디자인(공공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가로시설물)
- 공공용품디자인(공공기관 용품, 서식)
- 중앙부처별 별도 추진(자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공간정보디자인(간판, 도로체계, 화폐)
- 공간환경디자인(오감 인출매체, 이간 조명, 음향인출)

####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자치조례의 제정 활성화 및 근거법 명시 無

- 자연경관조례(자연환경보전법), 도시경관조례, 도시디자인 조례(경관법), 공공디자인 조례(자치)
- 도시디자인 조례(서울, 부산, 전북)
- 도시경관조례(경주, 인천)
- 전당부서(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경기)
-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이 도시디자인 조례나 도시경관조례 내용과의 중복
- 공공디자인 조례안 조례(경주)
- 자연경관조례(대전, 강원, 전남, 경남)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6

### 공공디자인 영역별 관련 제도-공공공간

구분	세부내용	관련법률	현제점
여의 공간		국토 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연공원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개발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용도, 규모, 위치에 대한 규정만 있음</li><li>· 도입시설도 정의와 수량만 규정</li><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li>· 동일공간에 조성시, 시설별 주체가 달라 효율성을 확보 곤란</li></ul>
행정 공간	공원, 운동장, 묘지, 공공기관 부속용지, 광장, 놀이터, 보도, 주차장	건축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경,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만 있음</li><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ul>
문화/ 복지 공간	공공안내소, 마을회관, 펌프장,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등사무소, 군사 공간,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건축법, 관광 기본법, 관광 진흥법,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문화 예술 진흥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설 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 공간 및 시설의 정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경, 시설의 설치 및 운영만 규정</li><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ul>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7

#### 공공디자인 영역별 관련 제도-공공공간

구분	세부내용	관련법률	한국점
역사시설 공간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 터미널, 철도역사, 지하 철역, 공항, 항만, 고속 도로 휴게실,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건축법,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신항만 건설 촉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조경기준, 시설 기준에 대한 항목 있음</li> <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li>· 각 항목별 제작·설치·운영 관리 주체가 달라 효율성 확보가 어려움</li> </ul>
교육/연 구 공간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운동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혹은 기타 유사 기능의 공간디자인	건축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용도 변경, 조경기준에 대한 항목 있음</li> <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ul>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8

#### 공공디자인 영역별 관련 제도-공공시설

구분	세부내용	관련법률	한국점
교통 시설	도로, 터널, 철로, 고가도로, 교량, 보행 신호등, 웜스, 블라드, 가드레일, 가로파식, 에스컬레이터,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육교, 지하도, 보행 유도등, 시각 경애인 유도블록,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톤클레이트, 공공기관 소유 차량	도로 교통법, 도로법, 고속국도법, 도시 철도법, 건설목 개량 촉진법, 유료 도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하 공공 보도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교통 악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능이촌 도로 정비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정의, 분류, 구조, 시설의 기준에 대한 항목 있음</li> <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li>· 동일공간에 조성시 시설주체가 달라 효율성 확보 어려움</li> </ul>
편의 시설	벤치, 의자, 엘리, 옥외용 테이블, 허지 등, 음수대, 재생이, 외장실, 새마장, 페점, 플랜타, 트렌치,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자연공원법,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산업 표준화 법, 산업디자인 전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설의 정의 및 범위, 설치 기준 및 관리에 대한 항목 있음</li> <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li>· 동일공간에 조성시 시설주체가 달라 효율성 확보 어려움</li> </ul>
공급 시설	이수처리장, 관개/폐수시설, 상수도시설, 맨홀, 발전소, 전신주, 보행등, 신호 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현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병원에병장지, 신원 확인 장치, 공중전화, 풍양개, 시계, 온습도계, 안포부스, 관광안내시설, 지역 안내도, 교통 정보판, 무인 민원처리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디자인	공중전와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건설 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법, 산업디자인 전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설치, 시설물의 항목 등에 대한 기준만 있음</li> <li>· 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ul>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9

#### 공공디자인 영역별 관련 제도-공공매체디자인

구분	세부내용	관련법률	한 편점
지시 유도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신호체계	벽화, 수피그래픽, 미디어 아트 등과 같은 시각 매체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표시의 경우 표지판, 글자 및 자주의 규격, 색채에 대한 규정이 있음</li> <li>옥외광고물의 경우, 분류와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 있음</li> </ul>
광고 홍보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전광판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도로 표지 규칙, 자동차 관리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국어 기본법,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제작·설치·운영·관리 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li> <li>디자인 요소 기준 全無</li> </ul>
행정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 페이지, 표찰, 각종 신문증, 환경,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상장	국가상장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장사인, 국가기관 상장사인	상표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상표의 종류 및 정의가 있음</li> <li>상표와 관련된 디자인 서식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li> </ul>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10

#### 경관관련 주요법규

##### ◦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관련 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국계법을 중심으로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부분계획으로 포함된 경관계획만으로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지자체의 독자적인 경관관련 조례는 자주조례로서 법적 담보성에 한계 노출

##### ◦ 경관법 특징

- 구성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로 구성
- 강제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일본식, 재산권 침해유발 방지)
- 계획, 사업, 협정 등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음 (규제기준 중첩해서 사용)
- 국계법의 경관지구 지정, 지구특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건축 협정 등)
- 경관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님(필요에 따라 개별위원회가 역할 수행)

**의무 강제하는 법제도가 아니며, 지자체의 경관행정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개하는 지원법으로서의 역할 수행**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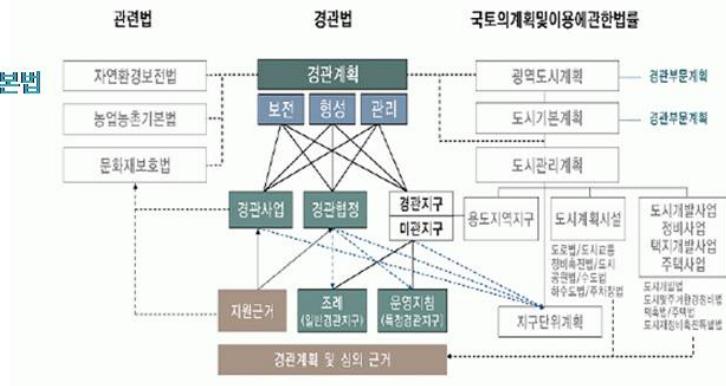
#### 경관법과 관련법과의 관계

##### ○ 국계법과의 관계

- 국계법과 같은 위계의 법제도로서 기존의 국계법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위계별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경관계획을 일괄적으로 경관계획에 포함시킴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국계법내에 존재하며, 경관법내에서 경관계획 수립시 관리수단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기타법과의 관계

- 자연환경보전법, 농업농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기존 경관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경관법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



### III. 공공디자인의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page 12

#### 경관법과 공공디자인과의 관계

##### ○ 경관계획상의 계획대상범위가 공공디자인 대상과 구분 모호(시행령 제3조)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경관계획의 구체적 설계방향에 관한 사항
- 중심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해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경관법상의 대상사업과 공공디자인사업의 구분 모호(경관사업의 대상, 법 13조 제1항)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3

### 국가정책상 공공디자인의 방향 및 문제점

#### ◦ 20세기 국가중심시대→21세기 도시중심시대

- 지역(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선진국은 지역(도시)특색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하면서 세계화 교류 및 경쟁

#### ◦ 공간가치가 부각되는 시대

- 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인식변화로 부가가치 창출
- 삶의 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인 도시디자인 적극 도입

#### ◦ 도시브랜드 및 정체성 부족을 극복하고자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기본원칙 부재

-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등에 기본원칙 부재

#### ◦ 기획, 계획, 사업, 관리등의 단계별 관리시스템 미흡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

- 각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통합된 디자인 및 이미지 창출 곤란
- 일회성, 전시성 개선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 제한적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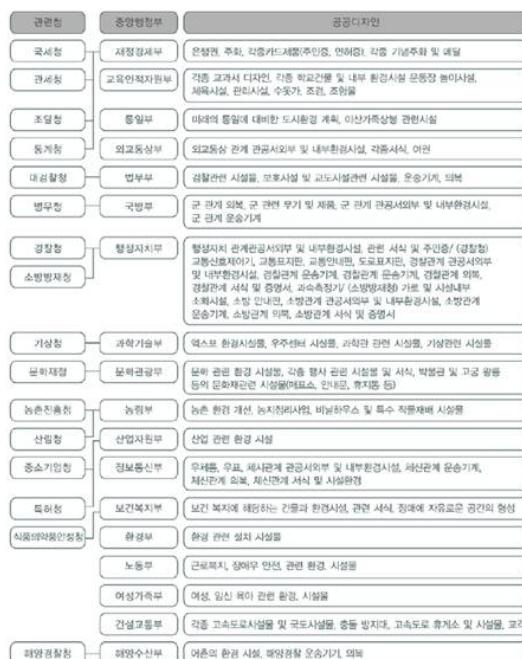
page 14

### 공공디자인 관련 부처별 업무

#### ◦ 복잡다기한 부처별 추진

#### ◦ 주요부처별 담당내용

- **지식경제부(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 정책 총괄, 공공디자인코리아 추진  
디자인 R&D 등
- **문화부(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공공디자인 확산사업 역점 추진  
간판문화 가로정비, 공공공지 문화공간조성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 **행안부(옥외광고물등관리법)**  
지역활성화사업과 연계, 간판시범거리 조성
- **국토부(건축기본법)**  
도심재생, 규제개혁,  
도시건축설계 및 디자인혁신업무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디자인 총괄 조정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5

### 국가정책상 공공디자인의 방향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코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수준 확보를 위한 통합 공간환경 디자인 요구 추세  
– 공공디자인은 공공건축,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을 포함
- 국가차원에서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유지 등 단계별 통합화 방안 마련 중  
– 프로세스 기준, 디자인 원칙 기준, 대상별 디자인 기준 등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6

###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 기준의 역할과 수립 주체

- 역할 :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님  
전과정에 있어서의 지켜야할 기본원칙으로 업무지침적 역할 수행  
– 기획, 계획/설계, 시공, 관리이용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단계별로 디자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역할

#### ◦ 수립주체 :

- 국가건축디자인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

#### - 지역건축디자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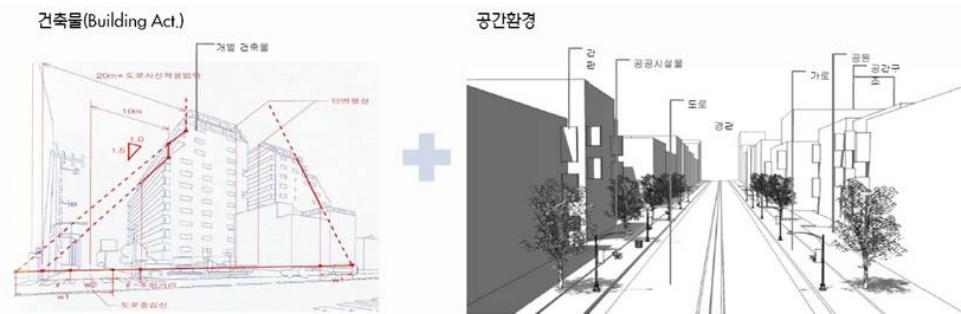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7

###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와 대상

- 목표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실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부합
  -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실현
- 디자인 전과정을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협력적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
- 대상 : 건축물과 공간환경(건축기본법 제3조4항)
  - 공간환경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
  - 공공공간 :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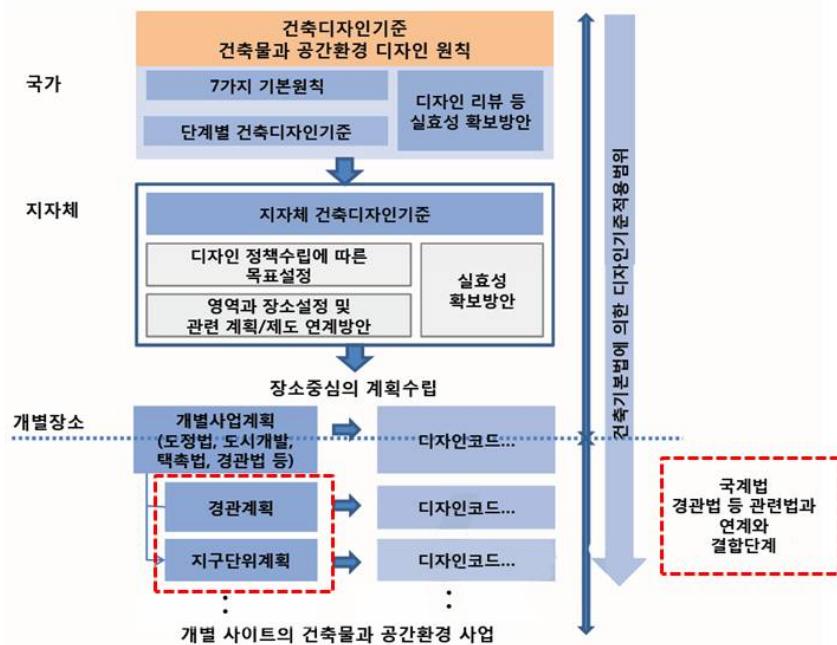
###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시범사업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살고 싶은 도시, 지역만들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등
- 공공건축조성사업
  - 학교, 문화시설, 보건시설 등 공공건축물
-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단계별 업무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
  - 도시개발사업 : 신도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 도시재생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 기성시가지 공간환경개선사업 : 가로특화사업, 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 : 공원, 광장, 도시기반시설 등
  - SOC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정책 수립과정에 적용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사업 추진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한 판단기준에 적용

## IV. 공공디자인의 관련 정책 변화

page 19

### 건축기본법상 건축디자인 기준의 관계



## IV. 결 론

page 20

### 공공디자인은 공간계획의 통합추진을 위한 수단이며, 관련법과 결합되어야 함

- **공공디자인의 도입 배경은 타당하나, 적용범위와 실행가능성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
  - 문화의 시대 도래에 따른 지자체의 도시발전전략으로는 공공디자인은 도입은 타당
  -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범위, 타 법률과의 중복성, 통합 추진체계 미흡
- **중앙정부의 정책은 규제보다는 지자체의 역량을 발휘에, 관련제도의 통합추진으로 인한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춤**
  - 국계리법 이후, 경관법부터는 지원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 역량을 중시
  -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 단계별 통합화 방안 마련 중
- **공공디자인은 장소중심의 계획으로 관련법과의 연관선상에서 결합되어야함**
  - 국가에서 추진하는 통합화방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개별 목표와 계획제도의 연계방안 필요
  -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소중심계획은 국계법, 경관법 등 관련법과의 연계선상에서 검토
  - 공공디자인은 실행수단이며, 목적이 될 수 없음